정　　관

1961년 12월 18일 제정
1963년 2월 28일 개정
1964년 2월 5일 개정
1966년 2월 10일 개정
1973년 2월 19일 개정
1977년 1월 27일 개정
1981년 3월 6일 개정
1986년 1월 31일 개정
1990년 2월 2일 개정
1992년 8월 26일 개정
1995년 2월 8일 개정
1998년 2월 6일 개정
2002년 2월 4일 개정
2004년 5월 8일 개정
2007년 1월 31일 개정
2007년 11월 7일 개정
2012년 1월 3일 개정
2015년 10월 23일 개정
2018년 3월 28일 개정
2019년 2월 8일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684호)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1.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
2. 1962년 창립 때부터 반세기 넘게 써 온 <사. 한국연예협회> <사. 한국연예예술인협회>는 업무성격의 단절을 막기 위해 본회의 약칭으로 사용한다.

제2조(소재지)

1. 본회 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회 광역시연합회는 각 광역시 내에, 본회 도연합회는 각 도 내에 두고, 본회 지회는 각 시.군.읍에 둔다.
   (각 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조(직제강화와 유사단체)

1. 본회의 직제는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본부> → <본회 각 광역시지회・광역시구지회・도지회・도연합회> → <본회 각 시군구 지회> 이 3단계로 이루어지며 항상 같은 정관 같은 내규에 의해 일관성을 유지한다.
2. 유사 단체와의 협업을 논의(추진)할 때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본회 총회의 결정
   2) 본회 이사회의 결정
   3) 본회 정관에 따른 결정
   4) 본회 내규에 따른 결정
   5) 정관이나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된 이사장의 결정
3. 지회나 연합회들은 공동주최 등 유사단체와 업무 추진시 본회에 보고한 후 지침을 받고 결정한다.

제4조(정신)

1. 우리 연예예술인들은 망국시절 구국의 악극무대에 다투어 몸을 던졌고, 분단시절엔 민족통일의 숭고한 정신으로 무대를 지켜왔다.
2. 전란 때는 전후방을 누비며 겨레의 상처를 위무(慰撫)하였고, 혁명후로는 산업화와 가난 탈출을 위해 민초들과 아픔을 같이하였다.
3. 애국심이 요구되는 이기적인 난세에 계승적 겨레사랑의 정신을 갈고 닦아 만세에 빛날 예술의 꽃으로 개화시키고자 궁구(窮究) 노력한다.

4. 이웃 나라 예술을 이해하고 교류하면서 한류예술(韓流藝術)의 우수성을 널리 펴는 전향적 예술정신을 갖는다.

제5조(목적)

1. 본회는 한국 풀뿌리 연예예술의 융성(隆盛)과, 예술의 생활화를 지향(志向)하며, 문화적 소외지역이 없도록 진력한다.
2. 더불어 예술인 상호간의 화합 및 예술인의 지위향상을 도모 한다.

제6조(사업) 전조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들을 한다.

1.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을 주는 공연사업
   (“파이팅 국민여러분” “다시뛰는 대한민국”등)
2. 청소년들에게 등용기회, 활동기회를 주는 공연사업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K-팝경연대회” “비보이댄싱대회” 등)
3. 문화 소외지역 및 시설 부대 등에 대한 위문공연 사업
4. 전국 향토 생활예술의 보전 승계를 위한 사업
5. 창작 노래 연주 연기(희극) 무용 공연 등 생활예술 전반에 걸친 콘텐츠(Contents) 개발에 관한 사업
6. 도농(都農)간 문화교류 사업 및 국제(國際)간 문화교류 사업
7. 방송 출반 영상 인터넷 등 예술 활동 공간의 질서 정화 사업
8. 한국연예계 대 선배들의 유업인 대한민국연예예술상(大韓民國演藝藝術賞) 시상에 관한 사업 및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대한민국청소년가요제, 청소년트로트가요제 등의 부대사업
9. 가요계 원로 선생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여러가지 기념사업 및 그 명의를 제호로 한 현인가요제(玄仁歌謠祭) 등과 같은 질 높은 가요제의 확장사업
10. 대한민국 연예예술사(-史) 등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업
11. 원로 예술인, 불우 예술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12. 케이 트로트(K-trot) 세계화를 위한 기반 사업
13. 본받을 만한 훌륭한 예술정신을 가진 원로 연예예술인에 대한 <스승님 추대사업>
1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7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기부금 등의 수익금은 협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사용 목적 및 직접 수혜자가 청소년 일반인 외국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8조(회원자격 및 가입)

1. 본회의 회원은 가요창작, 연주, 가수, 연기, 무용과 본회에서 인증 받은 가요강사 매니지먼트 등과 그밖에 새로 발생되는 연예예술 장르에서 연예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자(이하 연예예술인이라 한다)로 한다.
2. 연예예술 활동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본회의 회원 자격과 가입 절차는 본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연예예술 활동을 전문으로 하고자 본회 회원으로 가입한 자
2.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있는 자

제10조(회원의 권리)

1. 본회 회원은 연예예술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으며,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거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2. 본회 회원이 아닌 자는 본회 소속 전문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각종 회의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명예회원은 공적에 따라 그에 맞는 시상과 수상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연보금, 복지기금 등 제 부담금의 납부
4. 본회의 제반 행사 및 사업에 참가 또는 협력

제12조(회원 임원의 탈퇴)

1. 회원은 임의로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임원이 임원의 직을 사임코자 할 때는 이사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임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원의 탈퇴서와 임원의 사임서를 같이 제출해야하고, 협회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징계 및 포상)

1. 회원의 징계는 <징계에 관한 내규>에 의한다.
2. 징계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구성원 과반수(過半數) 찬성으로 결의하되, 단 제명 이상의 중징계는 참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3. 본회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이사장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정관 제11조(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사업 또는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때
   3) 본회와 유사한 단체를 조직하여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
   4) 공연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한 때
   5) 연예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6) 직무상 얻은 지식이나 비밀사항을 외부로 유포시켜 협회를 해롭게 하였을 때.
   7) 협회의 지휘체계를 벗어나 물의를 일으켰을 때
   8) 기타 징계에 관한 내규에 위배 되었을 때
4.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2년 이내의 자격 정지
   3) 견책
   4) 경고
5.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등 공로를 빛나게 할 시상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4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4명
3. 상무이사..... 1명
4. 이사(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상무이사 포함) 총.....47명
5. 감사..... 3명

제15조(임원의 선출)

1. 이사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2. 이사장을 비롯한 47명의 이사는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1) 이사장 1명
   2) 각 분야별협회장.....7명
   3) 각 분야별 협회에서 선출한.....22명
      가. 가요창작협회.....(4명)
      나. 연주협회.....(4명)
      다. 가수협회.....(4명)
      라. 연기협회.....(4명)
      마. 무용협회.....(4명)
      바. 가요강사협회.....(1명)
      사. 매니저협회.....(1명)
      (단, 가요강사협회, 매니저협회의 이사 수는 해당 협회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다른 협회 수준으로 보강된다)
   4) 이사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인준한 이사....17명
      가. 중앙지분 지명이사.....(5명)
      나. 지회지분 지명이사.....(12명)
      (단, 중앙 지분 5명의 지명이사는 집행부 안정을 위한 조치이고, 지회지분 12명의 지명이사는 전국지회를 중간 지휘하는 광역시지회장 도지회장(연합회장) 등을 우선적으로 지명하도록 한다)
3. 부이사장 4명의 선정에 있어서 중앙의 협회장이사 중에서 3명을 선정하고, 지방의 도지회장이사 또는 광역시지회장이사 중에서 1명을 선정한다.
4. 상무이사를 둘 필요가 있을 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이사 티오(TO)로 대의원 중에서 발탁하여 이사회 인준을 거쳐 상무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선출의 제한)

1. 이사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감사 이사 간에 전항 규정의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이사장, 부이사장, 상무이사) 4년
2) 감사..... 2년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제15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기를 마친 전임 임원들이 퇴임 변경등기를 미처 하지 못해 등기부에 올라있다 하여도, 신구 집행부 이취임과 그 권리 인계는 관행대로 시행된다.

제18조(이사장)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수석부이사장이 맡고 그 다음은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이사)

1.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2. 상무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회의 결의사항 및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1조(감사)

1. 감사(人)는 정관 내규에 따라 법인의 재산 사항,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한다.
2. 감사(人)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거나, 중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3. 감사(人)는 이상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감사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감사 보고서는 서면으로 작성한다.
4. 감사(人)는 법인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감사는 감사행위와 그 보고 외에 감사내용 상의 잘못을 시정하려는 과욕을 발하여 행정계통에 직접 명령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총회

제22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회 이사를 포함하여 각 분야별 회원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과 지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각 분야별 협회 및 지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다.
   1) 가요창작협회..... 30인
   2) 연주협회..... 30인
   3) 가수협회..... 30인
   4) 연기협회..... 30인
   5) 무용협회..... 30인
   6) 가요강사협회..... 5인
   7) 매니지먼트협회..... 5인
   - 단 위 6)항 7)항 단체는 설립초기 5인으로,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30인까지 확대될 수 있다.
   8) 총회 30일 전까지 재적 6개월 이상의 회원 100명 이상인 광역시지회 및 도지회 구지회는 각각 1인씩, 재적 6개월 이상의 회원 50인 이상인 시, 군, 지회는 각각 1인씩 구성한다.

제23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개최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3월중 실시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라도 회계연도는 그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3. 정기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기준 최소 7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개최 목적을 명시하여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임시총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 감사가 위급한 점을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 할 때 소집하되, 이사장은 소집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이사장의 유고시는 임시의장이 진행한다. 단, 임원선출총회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24조(총회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2.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본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6. 입회금 및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의결 제척사유) 본회 임원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과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6조(총회 정족수)

1.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총회 참석(구성권)은 위임할 수 있으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5장 이사회

제27회(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이사회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 사항
3.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의 사항
5. 정관의 변경
6. 재산관리
7. 본회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이 주어진 사항
8. 제반 규정 및 규칙의 제정
9. 회원 복지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여 이사장이 결정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정족수)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분야별협회

제31조(설치) 본회에 설치하는 분야별협회들과 그 협회의 활동방향 및 활동지표는 다음과 같다. 단, 각 분야별협회의 분실설치가 필요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1. 가요창작협회(歌謠創作協會)

1) 작사 작곡 편곡가들로 구성하고 건강한 창작활동을 지원.
2) 수준 높은 가요를 창작 보급하는데 목적을 둠.
3) 전국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향토작가들의 창작활동에 용기를 주고 향토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2. 연주협회(演奏協會)

1) 컴퓨터음악 노래방기기 등의 출현으로 위축되어가는 연주인들의 활동 보호.
2) 한국 연주음악의 전통을 이어 살리고, 실력 높은 연주가들을 육성 배출함.
3) 한곡의 연주음악일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하여, 한국연주음악의 지킴이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3. 가수협회(歌手協會)

1) 일제 망국기 남북분단 한국전쟁 등 어려운 역사를 민초들과 함께한 한국가수들의 긍지를 지켜감.
2) 한국의 가장 전통 깊은 가수단체로써 질 높은 가창활동의 향도가 됨.
3) 가요를 사랑하는 풀뿌리 지방가수들의 활동을 돕는 한편 가수들의 방송무대를 창출하는데 지혜를 모음.

4. MC희극협회(MC喜劇協會 : 연기협회)

1) 웃음을 창조하고 선물하는 희극인들의 전통을 살려가는 단체.
2) 현대감각에 맞는 질 높은 MC들을 육성하고 질 높은 행사진행의 전형을 만들어가고자 함.
3) 참신한 희극, 멋진 웃음을 많이 만들어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밝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5. 무용협회(舞踊協會)

1) 춤과 율동 스포츠댄싱 비보이 댄스 등 급변해가는 춤사위 속에서 한국무용의 설자리를 찾도록 함.

2) 실력 있는 무용인을 육성 배출하여 한국무용의 미래를 창조해 가도록 함.
3) 무용의 보급운동 속에 고전과 현대의 아름다운 몸의 언어를 예술로 승화시키도록 함.

6. 가요강사협회(歌謠講師協會)
1) 중앙과 지방 전국 각 지회에서 엄선 추천되어 온 가요강사들의 모임.
2) 노래의 경향에 대한 정보, 노래의 교육에 대한 정보, 등을 교환.
3) 고달픈 민초들로 하여금 노래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즐거운 인생도 살게 하는데 목적을 둠.

7. 매니저협회(Manager協會 : 매니지먼트management협회)
1) 중앙과 전국 각 지회에서 엄선 추천되어 온 연예 매니저들의 모임.
2) 지방예술인 지방방송 지방무대의 활성화로 지방예술을 꽃피우기 위한 목적.
3) 서로 다른 정보와 경험들을 나누고 결합하면서 지방에 까지 매니지먼트를 극대화 하고자 함.

제32조(임원회 구성)
1. 각 분야별협회는 협회장(이사) 1인과, 이사 4인, 위원 20인, 총25인 이내로 구성된 임원회를 둔다.
2. 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할 수 있으며 참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회의의 의장은 협회장이 된다.

제33조(분야별협회장 및 임원)
1. 각 분야별 협회장 및 임원은 해당분야 회원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식은 본회 규정으로 정한다.
2. 각 분야별 협회장은 본회 당연직 이사로서 각 협회를 대표하며 해당 협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34조(상임위원 또는 상근임원)
1. 각 협회에 상임위원 또는 상근임원 1명을 둘 수 있다.
2. 상임위원 또는 상근임원은 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협회장이 지명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상임위원 또는 상근임원으로 일하는 자는 임원회의의 당연직 멤버이며 협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상임위원 또는 상근임원으로 일하는 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수당을 줄 수 있다.

제35조(분야별 협회 회원총회)

1. 분야별 협회의 회원총회는 각 협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분야별 협회의 정기총회는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회계연도 정기총회 일정에 준하고, 임시총회는 관련내규 내지 관례에 준한다.
3. 분야별 협회 회원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원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분야별 협회 회원총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분야별 협회장 및 임원 선출
   2) 본회(본부)의 이사 및 대의원 선출
   3) 분야별 협회 예산 및 결산 승인 사항
   4) 본회에 관한 건의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36조(분야별 협회 임원회)

1. 분야별 협회 임원회는 각 협회장 및 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협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분야별협회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회원총회에 부의할 사항
   2) 협회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37조(분야별협회 신설)

1. 본회 내에 분야별협회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 회원 명단이 제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논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사장은 신생 내부 전문단체의 기초 작업을 위해 실행위원 또는 추진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일이 진척됨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창립 협회장(당연직 이사)을 둘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38조(재정)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본회의 의무와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9조(수입)
1.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 찬조금
   4) 사업수입 및 후원금
   5) 기타 수입
2. 기부금은 본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세입세출예산)
1.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 부대사업의 잉여자산은 계속 사업에 사용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2회 이상 감사하여야한다.

제8장 사무처

제43조(설치)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44조(사무처 업무) 사무처는 본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특히 총회(본부)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분야별협회 총회 회의록, 분야별협회 임원회 회의록을 각 1부씩 제출받아 보관한다. 단, 2인 이상의 임원이 확인하여 날인 된 회의록 원본이어야 한다.

제45조(직원) 사무처에 처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6조(직원임명)

1.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 제반 규정 및 결재라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2. 사무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처 업무를 처리한다.

제47조(보수)

1.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이사장, 상무이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사무처 직원은 유급으로 하되 보수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8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잔여재산) 본회가 해산할 때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50조(등기등본제출)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규칙 등)

1. 본회는 이사회 결의로써 규정 및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본회 정관이나 총회의 의사에 반할 수는 없다.
2. 전항에 따라 제정 변경된 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변경된 정관의 내용은 그것을 인용한 내부 규칙 조항 또한 즉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락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규정 및 규칙과 관례에 준한다.